

# 공정위, 32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올해 신규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47개 사업자 중 32개 사업자의 50개 계약서에서 총 129건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계약조항을 자체 시정한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폴리켄(주), 삼성비피화학(주), 태광산업 등 6개 업체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60일 안에 관련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32개 사업자의 불공정계약조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리점과의 일방적계약해지나 경영간섭 또는 일방적해석유보, 관할법원의 제한 등 거래상의 우월적지위 남용과 관련한 계약조항이 전체의 93.0%인 1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속조건부거래조항이 4.7%, 재판매가격유지조항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무선호출기 분야의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주)나래

이동통신의 경우 대리점에 대해 경미한 사유로도 사전 최고(催告)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까지 지정하는 등 모두 11건의 범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그 다음이 (주)금강과 신도리코로 각각 10건과 9건의 범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독과점지위에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대리점 등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거래상 우월적지위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리점사업자들의 거래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매년 신규로 지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원재료조달 단계의 구매계약서, 부품조달 단계의 부품거래약정서 등 각종 계약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왔다.

### ◆ 사업자별 시정권고사항 ◆

법 위반건수	사 업 자
11건	(주)나래이동통신
10건	(주)금강
9건	(주)신도리코
5건 이상	(주)두원공조 (8건), 코오롱전자(주) (6건), (주)포스코켄 (6건), (주)화승인더스트리 (6건), 대우통신(주) (5건), (주)오투기 (5건), 한국중공업(주) (5건)
4건 이하	(주)고합 등 19개 사업자

◆ 유형별 위반사항 ◆

[건, (%)]

총계	거래상지위의남용							판매목표 강 제	경 간 영 설	구 속 조건부 거 래	재판매 가 격 지 유 지
	불이익제공										
	소계	일방적 계약해지	관할법원 제 한	일방적 해석권유보	기한이익 상 실	기 타					
129 (100)	111 (86.0)	33 (25.6)	28 (21.7)	9 (7.0)	2 (1.5)	39 (30.2)	2 (1.6)	7 (5.4)	6 (4.7)	3 (2.3)	

◆ 대표적 불공정조항 ◆

불공정유형	대 표 사 례
구체성이 결여된 사유 또는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p>㉠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 또는 아래 명시된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사전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조건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li> <li>2. 상품 및 용역에 관련된 대금지급약정을 지체하거나 위배했을 때</li> <li>3. 을의 매장 및 담보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li> </ol>
경영업간섭 조항	<p>㉠ “영업업무의 휴일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한다.”</p>
관할법원제한조항	<p>㉠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p>
불공정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	<p>㉠ “본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약시 을은 채권잔액에 대하여 즉시 갑에게 완납하여야 하며 을이 발행 또는 배서한 유가증권의 지급기일이 미도래된 금액도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p>
일방적해석권유보 조항	<p>㉠ “본 계약서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p>
판매목표강제조항	<p>㉠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을의 판매목표량에 현저히 미달하였을 경우</p>
구속조건부거래조항	<p>㉠ “을의 판매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남북, 전남북으로 하고 이 지역 이외에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p>
기타불이익제공조항	<p>㉠ “전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제품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 없이 갑 임의로 회수조치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p>

# 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 본 협회,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회 구성 · 운영 —

본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개방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주 받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서헌재 학장, LG경제연구소의 우영수 박사와 김웅재 본 협회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주요 검토과제는 내국인이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과 이에 따른 내국사업자의 역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역외적용에 대한 해석론(긍정과 부정) 난립과 그간 외국인을 규제한 심결 사례의 부재
- ② 공정거래법이 경쟁법과 재벌규제법이 혼재하는 것이 역외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역외적용을 할 경우는 역차별 문제가 예상된다.
- ③ 국내계약과 국제계약 규정이 중복되어 역외 적용한다면 내국인만 규제할 수 있어 그 존재의의가 없다.
- ④ 서류송달, 과징금부과, 벌칙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규정이 미비하다.
- ⑤ 국내기업보다 시장지배력이 월등한 외국대

기업,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문제 및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 ⑥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적용기준 마련상의 문제(대규모기업의 경쟁제한적 혼합 기업결합과 역차별 및 매출액 산정방법)
- ⑦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적용기준 마련상의 문제
  -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와 국내재벌기업의 역차별 문제
  -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적용과 국내대기업의 역차별 문제
  -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제한행위의 금지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문제 및 전략적 제휴를 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적용방안
- ⑧ 외국기업에 대한 문서송달 규정의 미비
- ⑨ 처벌규정과 형법상의 관할권 규정과의 문제
- ⑩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규정 등

또한,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연구용역 작업결과에서 학계와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 공정거래연구회를 운영 중에 있다.

■ 본 협회 조사부

## 본 협회, 내년부터 공정거래연수원 설립 · 운영

— 공정거래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

본 협회는 협회 내에 『공정거래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동 연수원은 지난 '97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정관 개정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세부규정은 지난 10월 10일(금)에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98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동 연수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협회가 공정경쟁풍토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설립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동 연수원의 연수과정에는 공정거래제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이론, 소비자보호제도, 경제법에 대한 기초이론 등 공정거래제도와 관련된 분야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있다. 그리고 교육연수과정에 최고경영자과정, 관리자 및 실무자과정, 공정거래법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설치하고 업종별 기업체 임직원 교육과 정부 위탁교육 등의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동 연수원의 연수대상자에는 업계의 공정거래 업무 담당임직원, 대학 등의 학계 인사, 소비자보호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 본 협회 실시 교육 안내

## 본 협회, 지방순회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10월 22일(수)부터 10월 30일(목)까지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소재 지역의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공정거래교육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지방순회교육은 백화점과 유통업체, 주류 및 유통판매업체, 예식장 등 공정거래업무와 관련이 깊은 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100개 업체 임직원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의 심시제도 및 업종별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계의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도 병행하여 매일 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 본 협회의 공정거래교육에 대한 문의는 본 협회 기획부(☎ 775-9970~2/F 775-8873)로 하시기 바랍니다.

## SK(주), 공정거래관련 교육 대폭 확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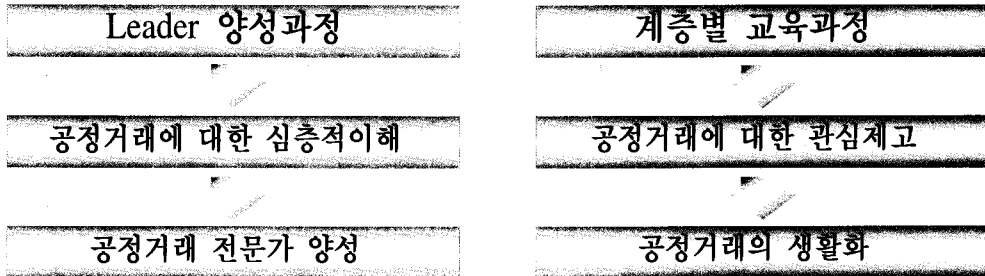
SK주식회사 업무팀

SK주식회사는 CI변경과 아울러 업계내 공정거래 선도기업으로서 공정거래자율 준수 분위기를 사내에 확산시키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관련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생활화·체질화를 유도하고자 기존에 실시해 오던 공정거래관련 교육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사는 관련 부서별로 공정거래 Leader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공정거래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부서내 공정거래관련 정보 및 제도의 전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발전시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심층교육 및 Work Shop을 통한 사례연구 교육과정도 실시하여 사내에 공정거래관련 전문가를 7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공정거래준수의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생활화 및 일상 경영활동에의 접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본 교육은 사내 공정거래팀을 강사로 활용하여 대덕연구단지내 SK(주) 마케팅 개발원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인사들도 초빙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 선도기업